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94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정진욱 · 안도걸 · 이개호
김문수 · 양부남 · 윤준병
박지원 · 전진숙 · 서삼석
정준호 · 조인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대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생략)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u><후단 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u><신 설></u>	<u>3.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u> <u>로 대가를 조정하지 않으면</u> <u>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u> <u>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u> <u>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u> <u>(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u>
⑧ · ⑨(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